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3. 05.



**국 토 교 통 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국도77호선 고창~부안간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으로 관광자원 개발, 도
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 촉진, 장래 서남해안시대의 활발한 활동에 대비한
도로망을 확충하고자 하며,
- 서해안 주변경관에 부합되는 상징적인 해상교량 건설로 관광 상품화를 통한 문화관광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국수준의 균등한 도로서비스 제공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1.2 계획의 개요

1.2.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2항 관련 [별표2]의 “2. 개발
기본계획”의 “마. 도로의 건설”중 2)항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됨.
-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3]의 “마. 도로의 건설”중 1)항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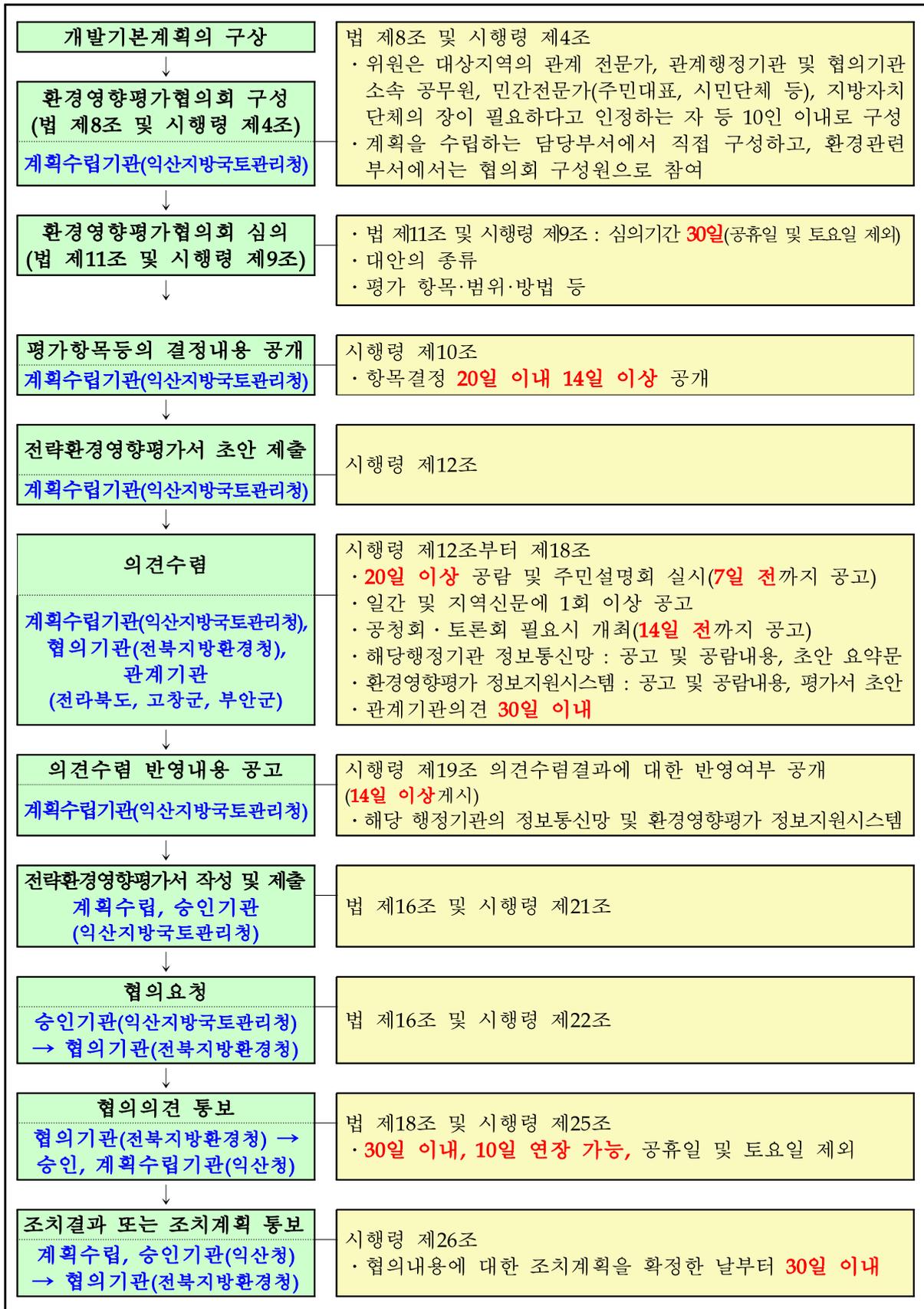
〈표 1.2.1-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요청 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전략 환경 영향 평가	2. 개발기본계획 마. 도로의 건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 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환경 영향 평가	5. 도로의 건설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나목·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 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 하는 때
사업규모		○ 도로연장 : 8.86km(신설)	

자료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자료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 3]

(그림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절차도



1.2.2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5년 12월 : 부안-고창 도로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익산지방국토관리청) 완료
- 2016년 12월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안 타당성재조사(고창-부안)
- 2017년 12월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안 예비타당성 보완조사(고창-부안)
- 2021년 01월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안 타당성재조사(고창-부안)
- 2021년 09월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고시(고창-부안)
- 2021년 12월 : 기본계획 고시
- 2022년 05월 :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기본계획용역 완료
- 2022년 09월 :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3년 01월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평가준비서 심의
- 2023년 05월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

1.2.3 평가준비서 작성근거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를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017.12)”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21-300호(2021.12.30.)”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음.

〈표 1.2.3-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근거 및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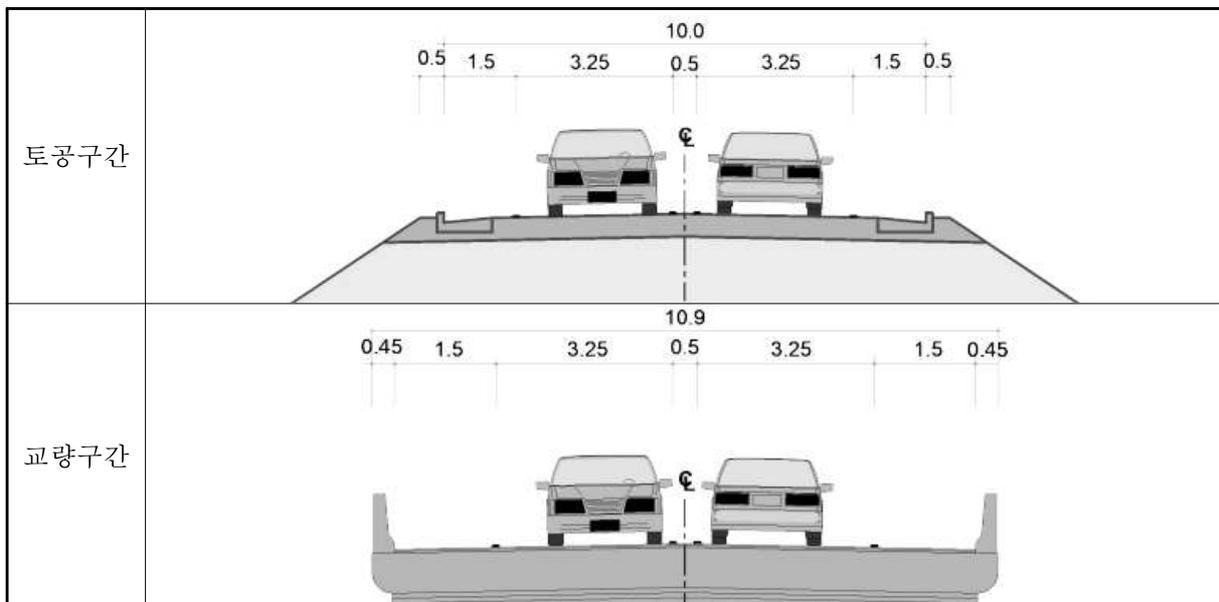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概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1.2.4 계획의 내용

- 계획명 :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 계획수립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승인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전북지방환경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1년 - 목표년도 : 2030년
- 공간적 범위
 -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시점)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종점)
 - 설계기준 : 국도 IV등급(설계속도 60km/h 적용)
 - 연장 : L=8.86km(2차로 신설, 교량 4개소 7,058m 포함)
 - 교량 : 해상교량(3개소, L=6,968m), 육상교량(1개소, L=90m)
 - 교차로 : 교차로 1개소
 - 해상교량 현황

교 량 명	형 식	교량연장(m)	비 고
고창대교(고창~소죽도 구간)	PSC BOX	1,488	
대죽교(소죽도~대죽고 구간)	PSC BOX	320	
노을접속A교	PSC BOX	3,480	
노을대교	Extradosed교	310	
노을접속B교	PSC BOX	1,370	

- 표준횡단구성 적용



[그림 1-1] 위치도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 주관 행정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계획수립기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11인(전북지방환경청, 주민대표 및 관련 전문가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3. 01. 17 ~ 2023. 01. 27
- 결정사항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토지이용 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심의위원 : 위원장 포함 총 11인

구 분	분 야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계획수립기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 ○	
위원	위원장 추천 민간전문가	(주)한국환경안전연구원	○ ○ ○	
	협의기관	전북지방환경청	○ ○ ○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전북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자문단	○ ○ ○	
	지자체 추천 공무원	부안군	○ ○ ○	
	지자체 추천 주민대표	변산면 이장협의회	○ ○ ○	
	시민단체 추천	자연보호중앙연맹 부안군협의회	○ ○ ○	
	지자체 추천 공무원	고창군	○ ○ ○	
	지자체 추천 주민대표	고창군 이장단연합회	○ ○ ○	
	시민단체 추천	고창군 생태환경 보전협의회	○ ○ ○	
	해양수산부 추천	군산대학교	○ ○ ○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1)

안건명: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전라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심의

안건번호/ 심의일시: 제2023-1호/ 2023. 1.17.(화)~1.27.(금)

심의의결

■ 안건의결 : <input checked="" type="checkbox"/>원안의결 / <input type="checkbox"/>수정의결 / <input type="checkbox"/>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input type="checkbox"/>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본 평가준비서의 내용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항목별 의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td> <td>의견 없음</td> </tr> <tr> <td>2. 토지이용 구상안</td> <td>의견 없음</td> </tr> <tr> <td>3. 대안</td> <td>의견 없음</td> </tr> <tr> <td>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td> <td>의견 없음</td> </tr> <tr> <td>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td> <td>의견 없음</td> </tr> <tr> <td>6. 기타 사항</td> <td>의견 없음</td> </tr> </tabl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3. 대안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의견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의견 없음	6. 기타 사항	의견 없음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3. 대안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의견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의견 없음												
6. 기타 사항	의견 없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월 일

심의위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1)

안건명: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전라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심의

안건번호/ 심의일시: 제2023-1호/ 2023. 1.17.(화)~1.27.(금)

심의의결

■ 안건의결 : <input type="checkbox"/>원안의결 / <input type="checkbox"/>수정의결 / <input type="checkbox"/>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input type="checkbox"/>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적정함.												
항목별 의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td> <td>적정</td> </tr> <tr> <td>2. 토지이용 구상안</td> <td>적정</td> </tr> <tr> <td>3. 대안</td> <td>적정</td> </tr> <tr> <td>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td> <td>적정</td> </tr> <tr> <td>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td> <td>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과 방법을 보다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권유함 이유: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강화 필요</td> </tr> <tr> <td>6. 기타 사항</td> <td>적정</td> </tr> </tabl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적정	2. 토지이용 구상안	적정	3. 대안	적정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적정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과 방법을 보다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권유함 이유: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강화 필요	6. 기타 사항	적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적정												
2. 토지이용 구상안	적정												
3. 대안	적정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적정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과 방법을 보다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권유함 이유: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강화 필요												
6. 기타 사항	적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심의위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 안건의결 : <input type="checkbox"/>원안의결 / <input checked="" type="checkbox"/>수정의결 / <input type="checkbox"/>보완(재심의)	
--	--

총괄의견

- 본 개발기본계획은 국토77호선 고창-부안간을 연결하는 도로건설 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상위-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적정성을 바탕으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제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를 구성하여야 함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보전목표는 평가분야 또는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목표-방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과 평가 및 측정-분석이 용이하도록 설정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분야-항목별 세부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자연환경의 보전 평가 항목에는 습지보전계획 등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 등이 반영되어야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준비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p.17), 계획의 적정성(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본 계획은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상위-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
-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예측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장래 교통수요를 고려한 토지이용 구상안을 검토하되, 지역 특성(시해안 주변 경관 등)을 반영하여야 함

4. 대안

- 대안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비교와 입지 대안을 포함한 3개 이상을 설정하고, 설정된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 및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가. 평가 항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의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분류-작성

나. 평가 범위·방법

-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분석 데이터 등 현황자료는 충분한 현장조사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동-식물상 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여 출현, 생육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 조사횟수 범위 등을 설정하고, 현지조사 외에 지역 실정에 밝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병행하여야 함
-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2-240호(23.1.1.)]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하되, 다음의 항목을 중점 검토-제시하여야 함

항목	소분류	의견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계획(도로망 종합계획 등) 및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적정성 여부 검토 제시 본 사업으로 습지보호지역이며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바, 제1~4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제4차 람사르전략계획에서 정한 습지보호를 위한 목적취지 등에 대해 검토제시 사업노선이 지나는 지자체(고창군 부안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고창갯벌, 울포만갯벌)에 대한 보전 관리 대책을 조사하고 본 사업과의 관련성 검토제시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및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식물상 수질의 조사지점 및 횡수 등은 총 공사구간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인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갯벌 생태계조사, 조류이동성 조사는 계절특성, 생육 환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반영 갯벌 습지 생태계조사에는 관련 전문가 참석
자연환경의 보전	지형생태축의 보전 및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를 예측·분석하여 지형 훼손 및 토공량 최소화 방안 강구제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경관적 이질감 최소화 방안 검토

항목	소분류	의견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 주변 정온시설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기질 및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을 평가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훼손 영향 평가 및 친환경적 토지 이용 방안 강구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되,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서) 작성

- 다양한 홍보매체(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음·연, 동사무소 게시판, 현수막 등) 활용, 설문조사,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는 등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방안, 의견수렴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

○ 본 사업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 수렴도 필요함(「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7. 기타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같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직 위 : 전북지방환경청 [인] 성 명 :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1)

- 안 건 명: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심의일시: 제2023-1호/ 2023. 1.17.(화)-1.27.(금)
- 심의의결

안건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2. 토지이용 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6. 기타 사항	습지보호지역에서 안수 면적은 생물이 풍부하여 개발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1)

- 안 건 명: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심의일시: 제2023-1호/ 2023. 1.17.(화)-1.27.(금)
- 심의의결

안건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 노선
2. 토지이용 구상안	일부지역의 지리정보를 보완한 확보할 적용 검토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6. 기타 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 월 일

심의위원 : [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1)

- 안 건 명: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심의일시: 제2023-1호/ 2023. 1.17.(화)-1.27.(금)
- 심의의결

안건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전략환경영향 준비에 고려할 사항으로 평가항목, 범위 및 방법과 대안에 대한 검토가 대체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본 사업은 육상과 해상 포함되기에 해역 환경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수정 또는 보완 필요함)
2. 토지이용 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첨부-1 참조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6. 기타 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심의위원 : [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p>첨부-1</p> <p>-15쪽: 공사중 영향으로 교각 공사시 (굴착등) 흐름(조류)변화 및 저니트 교만에 의한 부유 영향 살펴볼 수 있는 항목, 범위 및 측정 수치모형 예측방법 요구됨. 공사후에는 지속적 모니터링 의미 없을 수도 있음</p> <p>-20쪽: 유상 동식물과 함께 해상 동식물상 조사 포함 필요 - 향후 공사로 인한 피해 영향 평가에 반영 가능</p> <p>-20쪽: 주교각 및 다수의 교각 건설에 따른 해상공사에 따른 영향 포함되어야 함</p> <p>-26쪽: 방사르 습지보호지 지정된 감소만 입구에 위치한 당 공사구역의 중요성 감안되어야 함</p> <p>-29쪽: 노선의 일부 포함이라는 표현 → 중요성 감안 [상당]부분 포함으로 수정 필요함</p> <p>-34쪽: 유상의 하천수질만 언급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주 구간이 해상이므로 해양수질도 포함되어야 함</p> <p>-55쪽: 습지보호지에 대해 영향평가 실시 이전 단정적인 영향 없다는 표현 위험 → 다수의 교각 건설로 인한 흐름단면의 변화 (유수단면)가 창낙조시 미치는 지속적 영향으로 습지내부의 침퇴적 성형 변화 유발될 가능성 존재함. 면밀한 영향평가 필요한 부분임</p> <p>-64쪽: 유상 이외에 해양 동식물상 조사 필요한 부분임</p> <p>-64쪽: 수환경부분에 교각 공사시 유속변화, 부유사 확산 영향등 조사 및 평가 필요함. 습지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도 검토 필요</p> <p>-66쪽: 수환경의 해양환경에 앞서 지적한 사항 포함되어야함</p> <p>-69쪽: 해양수질 조사 이외에 유속, 조위 변화등 현황 조사 필요함</p>	

2.3 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2.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해양 포함)	○ 계획노선을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노선 경계로 5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교량 설치시 시·종점 및 교각 지형변화 ○ 노선계획의 적정성 검토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 변화 발생 지역 - 교량설치구간, 회전교차로 신설 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해양 포함)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구간, 투입 인원으로 인한 오수 발생시 유입 가능 수계 ○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사업시행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계획노선 및 주변 수계	○ 공사시 ○ 운영시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기 상	○ 계획노선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정읍·부안기상대(2012~2021) 자료 활용	○ 계획노선 인근 기상관측소	○ 공사시 ○ 운영시
		대기질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이동차량에 의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노선 경계로 5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토 양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교각 항타 및 발파 등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영향 예상지역	○ 계획노선 경계로 5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에 따른 발생오염물 처리계획의 적정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건설폐기물, 분뇨 등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노선	○ 공사시
		온실가스	○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지역 ○ 운영시 이동배출원의 온실가스 발생지역	○ 계획노선	○ 공사시 ○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노선 인근 토지이용 변화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인구	○ 계획시행으로 인구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운영시	

[그림 2.3-1] 대상지역 설정도(전략환경영향평가)



2.3.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계획의 적정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 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여부 검토 ○ 친환경 노선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성 검토	-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해양 포함)	○ 계획노선 경계 -500m 이내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전국자연환경조사, 인접 개발사업 평가서 등 ○ 육상 및 육수, 해양 동·식물상 현황조사 -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육상 곤충류, 양서·파충류,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조간대 갯벌 등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보전대책 수립	동·식물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노선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 시 지형의 변화 및 안정성 검토 - 토공, 교량 계획 분석 ○ 도로계획의 적정성 검토 ○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현황과악	지형·지질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 시 경관변화 검토 및 저감 대책 수립	경관
		수환경의 보전 (해양 포함)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수질 오염현황 조사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저감대책 수립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예상	수질 (수리·수문, 해양수질)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계획노선 경계 -대기질 500m -소음진동 500m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정읍·부안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 자료 분석 - 대기현황 조사 - 토양오염현황 조사 - 소음·진동현황 조사 ○ 환경기준 부합여부 검토 및 목표 기준 설정 ○ 계획수립에 따른 분야별 환경영향 예측 ○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 수립	기상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환경기초 시설의적정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 계획시행 시 발생오염물 처리계획 적정성	-
		자원·에너지 순환의효율성	○ 계획노선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폐기물 등 발생 및 처리대책 검토 ○ 공사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친환경적 자원순환 온실가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계획노선 설정의 적정성 ○ 주변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 계획 노선 선정안 검토	토지이용
	인구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인구 유입에 따른 영향 검토	-	

2.3.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 계획노선을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 생활사 변화 예상지역	○ 계획노선 경계로 5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 계획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의 영향 예상지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대기환경	기 상	○ 계획노선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정읍·부안기상대(2012~2021) 자료 활용 ○ 대기질 예측에 기초자료로 이용	○ 계획노선 인근 기상관측소	○ 공사시 ○ 운영시
	대 기 질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 배기가스 발생으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이동차량에 의한 대기 영향 예상지역	○ 계획노선 경계로 5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지역 ○ 운영시 이동배출원의 온실가스 발생지역	○ 계획노선	○ 공사시 ○ 운영시
수환경	수 질 (수리·수문)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등 영향 예상 수계 (토공, 교량구간) ○ 현장사무소 인원으로 인한 오수 유입 수계 ○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 예상 수계	○ 계획노선 및 주변 수계	○ 공사시 ○ 운영시
	해양환경	○ 계획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예상지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토지환경	토지이용	○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노선 인근 토지이용 변화 ○ 시·중점부 주변도로 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운영시
	토 양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지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지형·지질	○ 흙 쌓기·깎기, 교량 등 계획에 따른 지형 변화 ○ 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지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건설폐기물, 분뇨 등 폐기물 발생 예상지역	○ 계획노선	○ 공사시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교각 항타, 발파 등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영향 예상지역	○ 계획노선 경계로 5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위락·경관	○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 변화 발생지역 - 교차로 신설 및 교량 설치 구간 ○ 기존 위락시설과의 연계성 등 접근성 검토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사회·경제환경	인 구	○ 사업시행에 따른 유입 인구변화 영향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그림 2.3-2] 대상지역 설정도(환경영향평가)



2.3.4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자연생태 환 경	동·식물상	○계획노선 경계 500m이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현황조사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육상곤충류, 양서·파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등 ○계획시행으로 인한 변화 예측 및 보전대책 수립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자산 현황 및 영향 검토	-
대기환경	기 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정읍·부안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	-
	대 기 질	○계획노선 경계 500m 이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대기질 현황 조사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영향 ○운영시 이동차량에 의한 대기 영향에 대해 모델예측을 이용한 정량적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연료사용(배기가스 발생)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공사시 운영시
수 환 경	수질 (수리·수문)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수질오염현황 조사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영향 검토 및 저감대책 수립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 검토	공사시 운영시
	해양환경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해양환경현황 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계 및 해양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저감방안 수립 ○해양물리,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역이용 상황 등 조사 및 분석	공사시 운영시
토지환경	토양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 등에 따른 토양오염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공사시
	토지이용	○계획노선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검토	-
	지형·지질	○계획노선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에 따른 영향 및 저감방안 수립 ○토공계획 및 시설물(교량 등) 검토	공사시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공사시 발생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공사시
	소음·진동	○계획노선 경계 500m 이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소음·진동현황 조사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 ○운영시 도로 소음 영향 검토	공사시 운영시
	위락·경관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검토 ○기존 위락시설과의 연계성 등 접근성 검토	-
사회·경제 환 경	인 구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인구 유입에 따른 영향 검토	-

제3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3.1 전략환경영향평가

3.1.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협의회에서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항목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3.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가. 초안 공고 및 공람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정보통신망 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공람할 계획임
- 공고시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공고방법 : 전국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공고기간 : 20일~40일 범위에서 공람(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주민의견서 비치장소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1개소 이상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공람장소는 추후 협의 후 결정)

나.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시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
(설명회 개최하기 7일 전 일간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최공고 : 초안 공고(일간 및 지역신문)시 설명회 개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 개최장소 : 설명회 개최 장소는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등과 협의 후 결정

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생략(환경영향평가)

○ 본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향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및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본 평가준비서 단계에서 동시에 결정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생략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 제2항
<p>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p>	<p>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3.3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생략

○ 본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는 향후 환경영향평가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5항의 1~4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협의기관인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5항	절 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4조)
<p>제25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6.5.29>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p>	<p>협의요청서류 작성 사업자(증명서류 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p> <p>절차생략에 관한 협의 요청 사업자→승인기관 장→협의기관 장</p> <p style="text-align: center;">↓</p> <p>요청내용 검토 협의기관 장</p> <p style="text-align: center;">↓</p> <p>협의결과 통보 (협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의기관 장→승인기관 장→사업자</p>